

1. 개정이유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과 연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.

교육지원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성적이 직전학기에 0점인 경우 다음 학기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교육지원대상자의 학업을 독려하고, 교육지원대상자 및 학교담당자에게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여 교육지원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안내, 교육하고자 함.

또한, 교육지원금의 부정수급 등의 사례를 발견 시 통일부장관이 이를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, 조사 후 부정수급 등을 확인시 교육지원 지급 비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지역적응센터 지정 절차와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함.

2. 주요내용

가.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6에 따라 창업지원을 하는 경우 관계부처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의5)

나. 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존 ‘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미만’ 사유 외에도 ‘직전학기 성적이 0점인 경우 추가’(안 제8조)

다.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가 통일부에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 없이, 재단 이사장에게 직접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결정을 받을 수 있

도록 함.(안 제8조의2제2항 및 제4항)

라. 교육지원 당사자 및 탈북민 교육지원 기관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, 교육지원 대상자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.(안 제8조의2제6항)

마. 통일부장관이 교육지원대상자의 실제 수업출석 여부 및 수업형태 등을 확인·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, 부정수급 등 확인시 교육지원 지급 비대상자로 결정하거나 보조금 환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8조의3, 안 제8조의4)

바. 지역적응센터 지정 시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외부위원 1/3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, 지역적응센터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5를 제3조의6으로 하고, 제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조의5(창업 지원)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6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부처의 장에게 창업 교육, 창업 현장 실습, 창업 상담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영 제39조제4항”을 “영 제39조제7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영 제39조제5항”을 각각 “영 제39조제8항”으로 한다.

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영 제39조제4항”을 “영 제39조제7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영 제39조제5항”을 “영 제39조제8항”으로, “별지 제6호의3서식”을 “별지 제6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4서식”으로 한다.

제7조의2제1항 중 “법 제22조의2”를 “법 제22조의3”으로, “전문상담사가

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양성교육을 실시하고”를 “전문상담사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등을 고려하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성적과 희망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의2”를 “법 제15조의2”로, “배치하거나, 북한이탈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”를 “배치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미만인 경우로 한다”를 “미만이거나 직전학기 성적이 0점인 경우를 말한다”로 한다.

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통일부장관”을 “재단 이사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”를 “다음 각호”로, “통보하여야 한다”를 “보고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통일부장관”을 “재단 이사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영 제46조제3항에 해당하는 국립·공립인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지원대상자의 등록금 면제현황을 파악하는 데”를 “영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대학등 교육기관에 대해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며, 교육지원대상자의 면제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입학금·수업료 등을 지원받는 교육지원대상자는 재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

제8조의3, 제8조의4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3(교육지원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) ① 통일부장관은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기관과 교육지원대상자에

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1. 수강신청서(시간표), 출석부, 과목별 수업(강의)계획서
2. 취업자의 경우 출·퇴근부, 근무편성표
3. 그 밖에 부정수급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

② 제1항에 따른 “부정수급”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통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를 말한다.

1. 원거리 직장인 등 수업에 출석하기 어려운 자에게 출석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부여하는 경우
2. 고등교육관계 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수업시수가 미달한 자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경우
3. 교육부에서 인가받지 않은 임의 학습장에서 수업을 받는 경우
4. 학칙 또는 수강계획에 없는 주말 또는 휴일 등 특정한 날에 종일수업 또는 단축수업을 실시하고 학점을 부여받는 경우
5.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부정수급행위가 인정되는 경우

제8조의4(부정수급 조사 처리) ① 통일부장관은 제8조의3에 따라 확인·조사하여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지급 비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. 국고보조금 지급 비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해당 학교와 취학자에게는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② 신입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해당 학교 및 취학자가 제출

한 소명자료의 검토결과 정상적인 취학으로 인정하면 해당 국고보조금 지급 비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④ 국고보조금 지급 비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국고보조금의 환수와 관련하여는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을 따른다.

제9조(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절차)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모, 현장방문, 자체 심사 등을 거쳐 지역적응센터 지정에 적합한 기관, 단체를 통일부장관에게 추천한다.

②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적합한 기관, 단체를 지역적응센터로 지정한다.

③ 통일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 등 외부위원을 1/3 이상 포함하여 각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기관, 단체가 지역적응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1.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수행 경험과 실적
2. 기관장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 경험
3. 경험 있는 직원 및 자원봉사자 확보 여부
4. 재정 능력 및 자체재원 확보 여건(구체적인 재정지원 계획 포함)
5. 교육공간 확보 여부 및 교육시설 접근성
6. 지역사회 내 자원 발굴 및 협력연계 능력

취업장려금 지급 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 : 30일	
신청인	① 성명	② 하나원 기수		③ 생년월일	
	④ 주소				
	⑤ 전화번호				
장려금 지급사유	종류	구체적 사유			
	⑥ 취업	취업기간			
		업종			
		가입보험	[]고용보험[]산재보험 []국민연금 []건강보험		
그 밖의 사유	⑦ 이미 수령 한 장려금	[] 해당 없음 []직업훈련 [] 자격취득 [] 취업(회)			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의5, 제3조의6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, 제8조의2, 제8조의3 및 제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9조제8항 및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통일부장관 귀하

수수료 없음

(뒤쪽)

신청인 제출서류	장려금 지급 신청서 신청자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고용·산재보험 이력조회 및 상실신고내역(조회 화면) 신청자의 취업기간 급여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
-------------	---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
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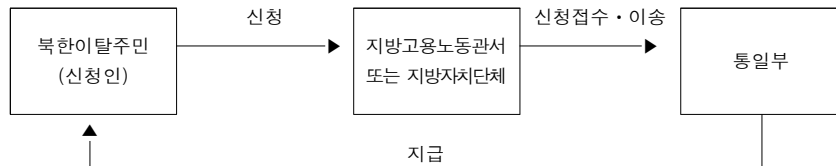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- ①, ②, ③, ④, ⑤란은 신청인 본인의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.
- ⑥, ⑦, ⑧, ⑨란은 장려금 지급 사유 등을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

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의4서식]

[] 직업훈련 [] 자격취득 장려금 지급 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: 30일
① 성명	② 하나원 기수	③ 생년월일
④ 주소		
⑤ 전화번호		

장려금 지급사유	종류	구체적 사유	
	⑥ 직업훈련	훈련 직종()	훈련기간(시간: 개월)
		훈련 직종()	훈련기간(시간: 개월)
		훈련 직종()	훈련기간(시간: 개월)
		훈련 직종()	훈련기간(시간: 개월)
		훈련 직종()	훈련기간(시간: 개월)
		기초직업적응훈련 이수 여부(하나원)	[]이수 []미이수
		지역적응교육 이수 여부(하나센터)	[]이수 []미이수
⑦ 자격취득	직업훈련 분야		
	취득 자격증		
그 밖의 사유	⑧ 이미 수령 한 장려금	[] 해당 없음 []직업훈련 [] 자격취득 [] 취업(회)	

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9조제8항 및 「북한이탈주민의
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통일부장관 귀하

수수료 없음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신청인 제출서류	구 분	직업훈련장려금	자격취득장려금
	공통	장려금 지급 신청서, 신청자 통장 사본, 신분증 사본	
	개별	직업훈련 수료 증빙서류	직업훈련 수료 증빙서류 자격취득 증빙서류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국가기술훈자격증 *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 술자격증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	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
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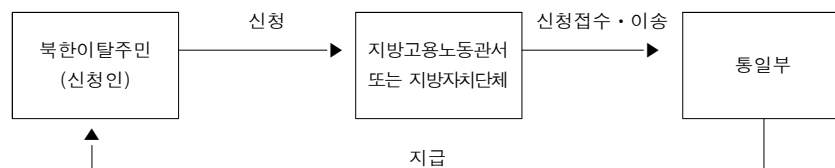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- ①, ②, ③, ④, ⑤란은 신청인 본인의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.
- ⑥, ⑦, ⑧란은 장려금 지급 사유 등을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 제3조의5(창업 지원)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6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부장관 등 관계부처의 장에게 창업 교육, 창업 현장 실습, 창업 상담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②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. 제3조의5 (생 략) 제6조(가산금의 지급사유 등) ①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한다. 1. ~ 4. (생 략) ② 영 제39조제5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가산금 지급신청서에 예금통장(계좌번호가 기	제3조의5(창업 지원)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6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부장관 등 관계부처의 장에게 창업 교육, 창업 현장 실습, 창업 상담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②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. 제3조의6 (현행 제3조의5와 같음) 제6조(가산금의 지급사유 등) ① 영 제39조제7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영 제39조제8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재된 면을 말한다)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 해야 한다.	----- ----- -----.	청서에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 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)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노동관서 등 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. 이 경우 신청서를 제 출받은 통일부장관은 「전자정 부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 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되, 신청 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	<u>의4서식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<u>영 제39조제5항</u> 에 따라 제1 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 호의2서식의 가산금 지급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 탈주민지원재단(이하 “재단”이 라 한다)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	③ <u>영 제39조제8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		
제6조의2(장려금의 지급사유 등)	제6조의2(장려금의 지급사유 등)	제7조의2(전문상담사제도 운영방 법 및 절차 등) ① 통일부장관 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<u>전문상 담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양성교육을 실시하고, 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 전문상 담사를 선발한다.</u>	제7조의2(전문상담사제도 운영방 법 및 절차 등) ① ----- -- <u>법 제22조의3</u> ---- <u>전문상담 사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등을 고려하고</u> ----- -----.
① <u>영 제39조제4항</u> 에서 장려금 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란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 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.	① <u>영 제39조제7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상담사를 <u>성과와 회 망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법 제 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 등에 배치하거나, 북한이탈주민</u>	② ----- ----- <u>법 제15조 의2</u> ----- ----- --- <u>배치하여 상담서비스를 제</u>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
③ <u>영 제39조제5항</u> 에 따라 장려 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<u>별지 제6호의3서식</u> 의 장려금 지급신	③ <u>영 제39조제8항</u> ----- ----- <u>별지 제6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6호</u>		

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.	공하도록 한다.
제8조(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아니 하는 경우) 영 제46조제4항 단 서에 따라 입학금·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는 경우는 영 제45 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 이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미만 인 경우로 한다.	제8조(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아니 하는 경우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미만 이거나 직전학기 성적이 0점인 경우를 말한다.
제8조의2(교육지원의 절차) ①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 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 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	제8조의2(교육지원의 절차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재단 이사장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에게 교육지원 여부 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.	<삭 제>
③ 재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	③ ----- 다음 각 호--- ----- -----

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----- ---- 보고하여야 한다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④ 통일부장관은 교육지원 신청 자가 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지원대 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 다.	④ 재단 이사장----- ----- ----- ----- --.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⑥ 통일부장관은 교육지원의 효 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46조제3항 에 해당하는 국립·공립인 교육 기관의 장에게 교육지원대상자 의 등록금 면제현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	⑥ ----- ----- 영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대학등 교 육기관에 대해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며, 교육지원대상자의 면제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-----.
<신 설>	⑦ 입학금·수업료 등을 지원받 는 교육지원대상자는 재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 다.
<신 설>	제8조의3(교육지원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) ① 통일부장관은 국 고보조금 교부 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기관과

교육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1. 수강신청서(시간표), 출석부, 과목별 수업(강의)계획서
2. 취업자의 경우 출·퇴근부, 근무편성표
3. 그 밖에 부정수급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

② 제1항에 따른 “부정수급”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통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를 말한다.

1. 원거리 직장인 등 수업에 출석하기 어려운 자에게 출석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부여하는 경우
2. 고등교육관계 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수업시수가 미달한 자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경우
3. 교육부에서 인가받지 않은 임의 학습장에서 수업을 받는 경우
4. 학칙 또는 수강계획에 없는 주말 또는 휴일 등 특정한 날

<신 설>

에 종일수업 또는 단축수업을 실시하고 학점을 부여받는 경우

5.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부정수급행위가 인정되는 경우

제8조의4(부정수급 조사 처리) ① 통일부장관은 제8조의3에 따라 확인·조사하여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지급 비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. 국고보조금 지급 비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해당 학교와 취학자에게는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② 신입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해당 학교 및 취학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검토결과 정상적인 취학으로 인정하면 해당 국고보조금 지급 비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④ 국고보조금 지급 비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국고보조금의 환수

<신 설>

와 관련해서는 「공공재정 부정
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
에 관한 법률」을 따른다.

제9조(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절차)

①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모, 현
장방문, 자체 심사 등을 거쳐 지
역적응센터 지정에 적합한 기
관, 단체를 통일부장관에게 추
천한다.

②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
장의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
종합심사를 실시하고 적합한 기
관, 단체를 지역적응센터로 지
정한다.

③ 통일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
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
사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
원 관련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
람 등 외부위원을 1/3 이상 포
합하여 각각 심사위원회를 구성
하여야 한다. 심사위원회는 다
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가
장 적합한 기관, 단체가 지역적
응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
여야 한다.

1.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

의 수행 경험과 실적

2. 기관장의 북한이탈주민 정착
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
원 경험

3. 경험 있는 직원 및 자원봉사
자 확보 여부

4. 재정 능력 및 자체재원 확보
여건(구체적인 재정지원 계획
포함)

5. 교육공간 확보 여부 및 교육
시설 접근성

6. 지역사회 내 자원 발굴 및 협
력연계 능력

7.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효과
성

8. 기타 통일부장관과 지방자치
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
는 사항

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적응
센터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
응을 위해 충실히 운영되도록
지원 및 점검하여야 하며, 필요
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
과 신속히 협의하여야 한다.

⑤ 지역적응센터 지정 및 운영
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

	<u>사항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</u> <u>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다.</u>
--	--